

#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기호 1번 하창우 후보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30, 3층 (서초동, 청석빌딩)  
화 02-594-6651, 6300 팩스 02-594-6302  
전자우편 5946300@hanmail.net

---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발 신 :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 기호 1번 하창우  
제 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송일자 : 2015. 1. 8.(목)  
전송매수 : 총 3매

---

## [ 민변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

기호 1번 하창우 후보

1.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상 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신분 보장과 변호사 단체의 독립성 및 자율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및 징계개시권은 변호사 신분 보장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 징계가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사명을 갖는 변호사의 행동 반경을 제어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제97조의 2 제1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

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91조는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은 제91조의 변호사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의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 개시 신청권은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 할 수 있고, 가사 징계 개시 신청권 자체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변호사의 비리나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협회장이나 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법무부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계위원회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대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 및 검사가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다른 경우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징계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97조의4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징계를 위해서는 조사를 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 ‘지체 없이’ 조항은 ‘1개월 이내’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 대한변협이 2014. 10. 31.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하여 2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 받을 여지가 있고 협회가 징계권을 스스로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의 개입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변호사법이 민간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특별히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가 공익적 기능, 사회 견제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이 변호사를 무더기 징계 신청하고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신청 이유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호사가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5명의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2명의 변호사를 징계 신청했다는 것인데, 이들 징계 대상 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활동입니다. 이 번 징계 신청이 문제된 것 중 하나는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의 무리한 집회해산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직무 활동이었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오히려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는 직무 활동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이지만 모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들이라 할 수 있는데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의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신청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